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폐기물 공공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「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5. 9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5. 8. 0. ~ 9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8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조직	정원	평가기간
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물재해대응과	4명 (5급 2명, 6급 2명)	2025년 12월 31일까지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